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, 부담금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함
(안 제30조제3항)

나. 일부 지시용어를 수정하고, 부담금의 구조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 (안 제30조제1항제2호, 제31~32조, 제34~제3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심사 전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2호 중 “처리수”를 “해양심층수처리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자신으로부터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구입한 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.

제32조제1호 중 “등록”을 “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처리수”를 “해양심층수처리수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평균단가”를 “각 제조업자등의 평균단가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해당 먹는해양심층수”를 “먹는해양심층수”로, “부과제외대상”을 “부과 제외 대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”을 “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전년도 판매금액”으로, “총판매량”을 “전년도 판매량”으

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 (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)”을 “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 판매가격”으로, “가격을 말한다)”를 “가격”으로, “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 규격별 총판매금액”을 “특수관계자의 용량규격별 전년도 판매금액”으로, “총판매량”을 “전년도 판매량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“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”을 “용량규격별 전년도 판매금액”으로, “총판매량”을 “전년도 판매량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판매가격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용량규격별로 산정한다.

②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용량규격별로 각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다.
2. 용량규격별로 각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판매량을 모두 더한다.
3. 용량규격별로 제1호의 판매금액 합계를 제2호의 판매량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각 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평균단가가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판매금액과 판매량을 제외하고 다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를 따른다. 다만, 해당 용량규격을 판매하는 사업자수가 3 이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4조제5항 중 “평균단가의”를 “평균단가”로, “평균가격”을 “평균 판매

가격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제2호 중 “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(전년도 톤당 평균가격”을 “전년도 평균 공급가격”으로, “가격을 말한다)으로 제공받”을 “가격으로 공급받”으로, “처리수”를 “해양심층수처리수”로 한다.

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.

1.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다.
2.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량(무게단위 톤을 기준으로 한다)을 모두 더한다.
3. 제1호의 판매금액 합계를 제2호의 판매량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
②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톤당 평균단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판매금액과 판매량을 제외하고 다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를 따른다.

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

로, “평균단가의”를 “평균단가”로, “톤당 평균가격”을 “평균 공급가격”으로 한다.

④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금액을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량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,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공급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6조제1호 전단 중 “평균판매가격에”를 “평균 판매가격에 용량규격별 먹는해양심층수 판매량과”로, “각 용량규격별”을 “용량규격별”로, “합산한다”를 “더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따라 평균가격”을 “따른 평균 판매가격”으로, “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”를 “용량규격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32조제2호”를 “해양심층수 판매량과 제32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처리수의 양”을 “해양심층수처리수 양”으로, “처리수의 제조”를 “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)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상업용 제품(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)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<u>처리수</u>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<u>2020년 12월 31일까지</u> 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. 제31조(부담금의 일괄납부) <u>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(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)가</u> 납	제30조(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해양심층수처리수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2024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. 제31조(부담금의 일괄납부) <u>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자신으로부터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구입한 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법 제40조제2항에</u>

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
납부하여야 한다.

제32조(부담금의 요율) 법 제40조
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
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
을 한 자(이하 “제조업자등”이
라 한다)에게 부과하는 부담
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
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
격의 1천분의 5로 한다.

2.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
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
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
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
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
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
로 한다.

제34조(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
법)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
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
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해
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
평균한 가격(이하 “평균가격”이
라 한다)에 용량규격별 판매량

따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.

제32조(부담금의 요율)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먹는
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-----

-----.

2. -----

-- 해양심층수처리수-----

-----.

제34조(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
법)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
평균 판매가격은 제조업자등이
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를 대상
으로 용량규격별로 산정한다.

을 공급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(이하 “평균단가”라 한다)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용량규격별로 각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다.
2. 용량규격별로 각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판매량을 모두 더한다.
3. 용량규격별로 제1호의 판매금액 합계를 제2호의 판매량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각 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평균단가가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판매금액과 판매량을 제외하고 다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를 따른다. 다만, 해당 용량규격을 판매하는 사업자수

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,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,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

2.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

가. 제조업자등이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(이하 “특수관계자”라 한다)에게 무상으로 제공(판매촉용은 제외한다)하거나

가 3 이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각 제조업자등의 평균단가-----
 ----. ----- 먹는해양심층수-----

 ----- 부과제외 대상-----

 -----.

1. 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전년도 판매금액-----
 ----- 전년도 판매량-----

2. -----

가. -----

<u>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(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)</u>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<u>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</u> 나. 수탁가공의 방식으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·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<u>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</u>.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,	<u>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 판매가격</u>----- ----- <u>가격</u>----- - <u>특수관계자의 용량규격별 전년도 판매금액</u>----- <u>전년도 판매량</u>-----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용량규격별 전년도 판매금액</u>----- <u>전</u> <u>년도 판매량</u>-----,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
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

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5조(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)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(이하 “톤당 평균가격”이라 한다)에 판매한 톤수(이하 “판매량”이라 한다)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----.

⑤ -----
----- 평균단가 -----

----- 평
균 판매가격-----
-----.

제35조(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)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.

1.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다.
2.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량(무계단위 톤을 기준으로 한다)을 모두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
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
로 본다.

1. (생 략)

2.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
무상으로 또는 통상 판매가격
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(전
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
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)
으로 제공받은 해양심층수 또
는 처리수를 사용하여 상업용
목적의 제품을 제조·판매하
는 경우

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

더한다.

3. 제1호의 판매금액 합계를 제
2호의 판매량 합계로 나누고 소
수점 이하는 버린다.

②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각 해
양심층수개발업자의 톤당 평균
단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
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
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
발업자의 판매금액과 판매량을
제외하고 다시 제1항제1호부터
제3호까지의 순서를 따른다.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전년도 평균 공
급가격-----

----- 가격으로 공급
받-----
-- 해양심층수처리수-----

<삭 제>

충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(이하 “톤당 평균단가”라 한다)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.

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,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. 이 경우 해당 해

④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금액을 전년도 해양심층수 판매량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,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공급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<삭 제>

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
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, 6
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
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
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
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
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
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
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장관은
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
하여 고시한다.

제36조(부담금의 산정방법) 부담
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: 제3
4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
판매가격에 제32조제1호의 요
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
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.
이 경우 제34조제5항에 따라
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
것은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
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
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.

2. 해양심층수의 경우 : 제35조

⑤ ----- 제3항
----- 평균단
가 -----

----- 평균 공급가격-----
-----.

제36조(부담금의 산정방법) ----

-----.

1. -----
----- 평균
판매가격에 용량규격별 먹는
해양심층수 판매량과 -----
----- 용량규격
별 ----- 더한다. --
----- 따른
평균 판매가격-----
-- 용량규격의 평균 판매가격
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2. -----

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에 제32조제2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3. 처리수의 경우 : 구입한 <u>처리수</u>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<u>처리수의 제조</u>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.	----- <u>해양심층수 판매량과 제32조제2호</u>----- -----. 3. ----- <u>해양심층수처리수 양</u>----- ----- -- <u>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</u>-- ----- ---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48